

겸임교원임용규정

제정 : 1993. 9. 1.

개정 : 2017. 9.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겸임교원 인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겸임교원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자격) ① 겸임교원은 비전일제로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전략적 필요에 의해 전일제로 근무하는 겸임교원(이하 ‘상근겸임교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3.19.>

② 겸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하며, 상근겸임교원은 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3.19., 2016.8.22.>

1. 국가기관, 공공단체·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이하 ‘산업체’라 한다)에서 정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2. 주당 2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
3. 소속 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자
4. 산업체에서 담당 예정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정규임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을 합산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분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 나. 해당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 다.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3년 이상
 - 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중 해당분야 학위가 없을 경우 7년 이상
5.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업체에서 담당 예정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정규임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을 합산하여 7년 이상 근무한 자
 - 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30대그룹 소속 기업
 - 나. 공시기준 자산총계 5천억 이상의 기업
 - 다. 공시기준 매출액 5천억 이상의 기업

[전문개정 2010.12.13.]

제3조(임용절차) ① 겸임교원 채용은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② 신규임용 심사절차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2.13., 2012.3.19.>

1. 서류평가심사 : 해당학부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3인
2.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개정 2017.9.27.>
 - 가. 비상근겸임교원 : 해당학부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4인
 - 나. 상근겸임교원 : 총장, 해당학부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3인
3. 삭제 <2017.9.27.>

③ 심사결과 겸임교원은 평균 70점 이상, 상근겸임교원은 평균 80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0.12.13., 2012.3.19., 2017.9.27.>

④ 삭제 <2012.3.19.>

⑤ 신규임용 및 재임용 대상자는 별표3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겸임교원은 별지 제1호 서식, 상근겸임교원의 경우 별지 1-1호 서식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0.12.13., 2012.3.19.>

⑦ 삭제 <2012.3.19.>

제4조(임용기간) ① 겸임교원의 최초 임용기간 및 재임용은 1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10.12.13., 2017.9.27.>

② 임용기간을 통산하여 최대 6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략적 필요에 의거 임용기간 초과자를 해당 학부(과)에서 재임용 추천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0.12.13., 2012.3.19., 2017.9.27.>

③ 겸임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연령은 만 65세가 되는 해당학기말까지로 한다. <신설 2.3.19.>

제5조(근무형태) ① 겸임교원은 전일제 또는 비전일제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2.3.19.>

② 상근겸임교원은 주당 12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한다. <개정 2017.9.27.>

[전문개정 2010.12.13.]

제6조(산업체경력 인정 범위) 산업체경력 인정 범위는 별표2에 준한다. <개정 2012.3.19.>

제7조(재임용) ① 재임용서류평가 심사는 해당학부 소속 전임교원 중 총장이 위촉하는 3인에 의해 재임용 서류평가 심사기준(별표4)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인비로 교무처장에게 제출 한다. <개정 2010.12.13., 2012.3.19.>

② 재임용서류 평가심사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자에 한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단, 상근겸임교원의 경우 평균 80점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10.12.13., 2012.3.19., 2015.7.21., 2017.9.27.>

③ 강의향상설문평가 결과가 연속하여 2개 학기 이상 전체 교원의 하위1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 한다.

제8조(직위) 겸임교원의 직위는 겸임교수로 한다.

제9조(심사결과 공개) 채용절차 종료 후 지원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제10조(임용인원) 겸임 및 초빙교원의 총 인정인원이 계열별 교원법정정원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부칙<2009.9.2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겸임교원임용내규” 는 “겸임교원 임용 규정” 으로 변경하며, “겸임교원채용에 관한지침” 은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겸임교원 직위 및 임용기간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4. (재임용 제한의 기산시점)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최대 6년을 원칙으로 하며, 기산일은 이 규정 시행 이전 “겸임교원채용에 관한지침”에 의거 2007. 3. 1일을 기준으로 임용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0.12.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신규채용이 공고되어 채용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2.3.1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6.>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1.>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22.>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7.>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심사 항목별 배점표 <신설 2012.3.19., 개정 2017.9.27.>

심사항목	겸임교원		상근 겸임교원	
	배점	반영율	배점	반영율
서류평가심사	100	40%	100	40%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100	60%	100	60%
합계	200	100%	200	100%

※ 서류평가심사 시 자격증 소지에 대한 가점은 서류평가심사 점수에 포함한다.

(별표 1-1) <개정 2010.12.13., 2012.3.19.>

신규 겸임교원 서류평가 심사기준

1. 초빙분야 적격 심사

배점	직무	기업체업종(주생산품)	평가
A(45점)	일치	일치	초빙분야와 산업체 경력이 매우적합
B(40점)	일치	유사	초빙분야와 산업체 경력이 적합
C(30점)	유사	일치	초빙분야와 산업체 경력이 매우유사
D(25점)	유사	유사,상이	초빙분야와 산업체 경력이 유사
F(0점)	상이	일치,유사,상이	초빙분야와 산업체 경력이 부적합

※ 서류평가 대상자의 해당경력 전체를 고려하여 평가

2. 학위 취득과 자격증 심사

최종학위	소지자격	해당없음	기능장(2점)	기술사(4점)	비고
박 사		5	7	9	
석 사		4	6	8	
학 사		3	5	7	
전문학사		1	3	5	

※ 초빙분야 관련 학위 및 자격증일 경우만 인정

3. 강의 경력 심사

강의경력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배점	5	3	2	1

※ 1년 기준 : 주당 6시간 이상 강의 경력(30주 이상)

※ 대학에서의 비전임교원의 강의경력만 인정

4. 산업체 경력 심사(산업체 경력은 누적)

중소기업		대기업										
		경 력 년 수										
		0	1	2	3	4	5	6	7	8	9	10
경 력 년 수	0	0			26	28	31	34	37	40	43	
	1			25	27	29	32	35	38	41	44	
	2		24	26	28	30	33	36	39	42		
	3	23	25	27	29	31	34	37	40	43		
	4	25	27	29	31	33	36	39	42			
	5	27	29	31	33	35	38	41	44			
	6	29	31	33	35	37	40	43				
	7	31	33	35	37	39	42					
	8	33	35	37	39	41	44					
	9	35	37	39	41	43						
	10	37	39	41	43							
	11	39	41	43							45	
	12	41	43									
	13	43										
	14											

※ 산업체 경력은 정규임직원으로 재직 한 경력만 인정한다.

- 대기업 기준 : 공시기준 자산 또는 매출액 1,000대 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30대그룹 소속기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연구기관

- 중소기업 기준 : 대기업 기준 외 산업체
- 산업체 경력과 강의경력(비전임) 및 학위기간이 중복될 경우 산업체경력으로 인정
- 산업체경력 산출 기준 : 산업체경력 × (평가위원의 경력적용률)

경력적용률	직무	기업체업종(주생산품)	평가
100%	일치	일치	초빙분야와 산업체 경력이 매우 적합
90%	일치	유사	초빙분야와 산업체 경력이 적합
80%	유사	일치	초빙분야와 산업체 경력이 매우 유사
70%	유사	유사,상이	초빙분야와 산업체 경력이 유사
0%	상이	일치,유사,상이	초빙분야와 산업체 경력이 부적합

(별표 1-2) 공개강의 및 면접 심사기준 <신설 2012.3.19., 개정 2017.9.27.>

심사항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발표력 및 표현 능력	20	16	12	8	4
전공분야 이해	20	16	12	8	4
강의 자세	20	16	12	8	4
품성과 태도	20	16	12	8	4
협동성과 활동성	20	16	12	8	4
소계	100	80	60	40	20

(별표 1-3) 삭제 <2017.9.27.>

(별표2) <개정 2017.9.27.>

산업체 인정 범위

산업체 종류	비고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연구기관, 초·중등 및 고등교육법 적용 받는 정규교육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 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해 보호육성 받는 연구기관
2. 법인 또는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 산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규모 협의체
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체	

※ 예외 인정사항 <개정 2017.9.27.>

구분	인정사항	비고
공업계열	-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	- 전문직 자격증 범위 : 기술사, 기능장, 건축사, 기술지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종사 중인자 - 군 정비장교 영관급 이상자로서 해당 분야에 종사중인 자
예·체능계열	-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예·체능 기능 보유자	- 예·체능 기능보유자 범위 : 기능전수 자 또는 장관상이상을 수여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이상 수상자로서 해당분야에 종사 중인 자
사회실무계열	-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	- 전문직 자격증 범위 :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종사중인 자
전체계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성이 인정된 자	- 산업체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의 업체

(별표3) <개정 2010.12.13., 2015.4.6., 2016.8.22.>

신규 임용 및 재임용 구비서류

순번	구 비 서 류	제출 부수	신규	재임용
1	임용지원서(소정양식)	1	○	
2	서약서(소정양식)	1	○	
3	삭제 <2010.12.13>			
4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2	○	
5	임용동의서(소정양식)	1	○	○
6	산업체 직무요약서(소정양식)	1	○	○
7	강의계획(안)	1	○	
8	재직증명서(현직장) 소득금액증명원 및 갑종근로소득 세 원천징수 확인서 포함, 산업체 장일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 명원	1	○	○
9	경력증명서(전경력) 소득금액증명원 및 갑종근로소득 세 원천징수 확인서 포함, 산업체 장일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 명원	1	○	
10	삭제 <2015.4.6.>			
1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12	학위증명서(석사 및 박사)	1	○	
13	사진	2	○	
14	기본증명서	1	○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인터넷에서 확인 불가능 할 경우 발행)

※ 신규임용지원 시 1,5,6,7,8,9,11,12,14번을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임용승인 후 제출

(별표 4) <개정 2010.12.13., 2017.9.27.>

겸임교원 재임용 서류평가 심사기준

1. 강의향상 설문 평가

설문평가 점수의 백분위 수	평가점수	비고
하위 40% 초과	A(40점)	
하위 30% 초과 ~ 40% 이하	B(32점)	
하위 20% 초과 ~ 30% 이하	C(24점)	
하위 10% 초과 ~ 20% 이하	D(16점)	
하위 10% 이하	F(8점)	

※ 평가방법 : 평가시행 직전 3개 학기 평균
(평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직전 1개 학기 평균)

2. 심사위원 평가(3인)

- 수업, 학생지도 및 학과기여도 심사

평가등급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F (매우미흡)	비고
평가점수	60점	48점	36점	24점	12점	

3. 강의계획서 미제출

- 미제출과목당 : -5점

4. 학과 취업 기여도

- 심사점수 : 취업인원수 x 2점

※ 학과(부)장의 취업 유치 확인서 및 취업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